「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포항시장(2026. 10. 06.)

나. 회부일자 : 2026년 10월 07일

다. 상정일자

❍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6. 10. 16)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교통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학동 공영주차장의 사무위탁에 관하여 위탁 절차에 의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사무명 : 양학동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 수 탁 기 관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위탁사무의 내용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징수

– 「주차장법」 제13조, 제15조에 관한 주차시설물의 유지·관리

– 그 밖에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관련된 사항

❍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간

❍ 위탁 관리 대상 시설 세부현황

주 소	위탁시설 면적(㎡)	시설규모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포항시 북구 학잠동 255	4,545.0	지하주차장 주차면수 117면	기부채납 (12,700)	

❍ 추진경과

- 2026. 06. : 위탁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 2026. 08. : 공공기관 위탁심의 원안 가결
- 2026. 09.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주차장 무료 운영 개시

❍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가. 적정성 검토 근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나. 검토 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영주차장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업무수행 능력과 효율성 관리능력이 우수하며 유사 시설 관리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함.(다른 사무방식 : 직접수행, 민간위탁, 용역 등)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 및「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보 가능 • 지속적인 노사협력 및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프로세스 구축으로 장기적인 업무 전담이 가능하며 통합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의 숙련된 인력의 유연한 전환배치로 공급의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유지관리 전문조직으로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에 관한 인적자원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합관리를 통해 관리비와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비용절감 측면에서 우수
④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21개소의 공영주차장 운영 전담 조직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 최초 위탁 후 10여년 간의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 설비 고장 시 전문인력의 즉각배치로 이용객 불편 최소화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정량·정성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 조례, 위탁계약의 체결, 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시 실적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⑦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으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 연속성 보장에 가장 부합함 • 전문인력 활용, 고용안정 등 인력의 규모화를 통한 중장기적 책임인력 운용 가능

다. 적정성 검토 결과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탁방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장기간의 수탁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 능률과 책임성 담보가 가능하고,
- 시 직영 및 민간위탁 대비 높은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기대 가능하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함.

❍ 포항시 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가. 심의 근거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심의 개요

- 일　　자 : 2026. 08. 21.(금)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내용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업무 전반

다. 심의 결과 : 적정(90.3점)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수익)	주차요금수입(a)	35	39	44	44	45	207
세출(비용)	운영관리비(b)	163	168	172	177	182	862
총 비용(a-b)		**△128**	**△129**	**△128**	**△133**	**△137**	**△655**

나. 수입금 산출내역서

구 분	단위	수량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평일	대/일	140	일	260	1,200	43,804,800
주말 및 공휴일	대/일	140	일	53	2,500	18,603,000
합 계						62,407,800
감면·미징수 보정(30%)						**43,685,460**

다. 비용추계 세부내역

구 분	세 부	금액(원/년)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직접인건비	112,288,440	68.8%	
	간접인건비	-	-	해당 없음
	① 인건비 계	112,288,440	68.8%	
경비	인적보험료	13,733,184	8.4%	4대보험·석면분담금 등
	수도광열비	12,892,776	7.9%	
	지급수수료	7,240,532	4.4%	
	지급임차료	420,000	0.3%	
	통신비	480,000	0.3%	
	복리후생비	300,000	0.2%	
	수선유지비	4,436,275	2.7%	
	소모품비	2,188,714	1.3%	
	② 경비 계	41,691,481	25.5%	
③ 순용역원가		153,979,921	94.3%	①+②
④ 일반관리비		9,230,079	5.7%	③ × 6%
⑤ 이윤		-	-	이윤 제외
⑥ 총원가		163,210,000	100.0%	③+④+⑤
⑦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면제
총괄원가		**163,210,000**	**100.0%**	⑥+⑦

3. 향후 추진 계획

❍ 2027년 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4.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사업)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명권)

❍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조성된 양학동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6월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6년 8월 위탁관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가결되어,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준수함.

비용추계에서 주차요금 수입은 5년간 총 2억 700만원, 운영관리비는 8억 6,200만원이 예상되어 총 6억 5,5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관리비에는 일반직(시설관리, 안전관리) 1명, 현업직(주차관리 및 요급수납) 2명 등 총 3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계약서(안)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사업비 부담, 수지정산, 사용료 및 수입금 처리, 지도·감독, 계약해지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위·수탁 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검토 결과,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결과,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장기간의 수탁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책임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포항시 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 적정 가결된 점을 고려할 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7. 토론의 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